

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
안
번
호

제259호

발의년월일 : 2001. 11. 14 .
발 의 자 : 이주원의원외 2인

1. 주 문

- 명 칭 :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
- 구 성
 - 인 원 : 11명(의장제외)
 - 위 원 : 최무영의원, 권국상의원, 김동숙의원, 김석기의원
김승기의원, 박병만의원, 박상문위원, 박순환의원
신현문의원, 이주원의원, 이한두의원,
- 구성기간 : 임시회 회기중
- 심사대상
 1. 「예산군 놀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조례안」
 2. 「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 · 운영업무 민간위탁동의안」

2. 제안이유

- 조례의 제 · 개정과 군민생활에 직결된 각종 안건을 심의 · 의결하는 입법과 의결기능은 우리 의회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임임
-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금번 제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안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 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50조